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40

2025. 11. 21.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1. 12. / 박윤옥 의원 등 9명

나. 회부일자: 2025. 11. 1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11. 2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노인들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에 직접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안 제6조)
-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권익보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봉규)

□ 조문검토

- 본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에 직접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
- 세부내용으로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각종 사업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장기요양요원이 업무 현장에서 열악한 근로조건 및 폭언·폭행, 성희롱 등의 환경에 노출되는 문제를 예방코자 권익보장에 대한 내용 규정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여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체계 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 음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41

2025. 12. 10.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1. 12. / 한송연 의원 등 10명

나. 회부일자: 2025. 11. 1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12. 1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어린이비전센터 이용 대상에 따른 상이한 시설 이용료 감면 사항과 중복감면 대상을 재정비하여 운영상의 효율을 도모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용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8조제4항)
- 라바파크 이용료 감면 기준 개정(안 별표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봉규)

조문검토

- 본 조례안은 어린이비전센터가 온라인 사전 결제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소·변경·환불 상황에 대비해

이용료 반환 기준을 신설하고, 라바파크의 감면 기준을 조정하여 남양주시민과 다자녀가정의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 라바파크 감면 기준 조정은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조례」에서 규정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의 정책 취지를 시설 이용료 체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용료 반환 기준(안 제8조제4항, 별표7)을 신설하여 환불처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계 지침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반환 기준의 명확화와 감면 체계 조정을 통해 어린이비전센터 이용 편의 증진과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라바파크 감면을 조정으로 연간 약 9,821천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남양주시민 전반의 시설 이용 접근성 확대, 다자녀가정의 혜택 향상, 가족 단위 체험활동 참여 증가 등의 정책 효과가 기대되는바,
- 향후 가족·다자녀 대상 프로그램 확대 등 시민 방문을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이용 활성화 전략 마련 등 조례 개정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4.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 음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55

2025. 11. 21.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5. 11. 12.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5. 11. 1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11. 2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남양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의 명칭과 위치를 정비하고,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 반영으로 민간위탁 운영 및 방법, 절차, 성과평가 등 세부 사항의 근거 마련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작업장의 명칭 및 위치 개정 [별표]

명 칭		위 치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가곡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남양주시가곡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150-1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360번길2-11 (가곡리150-1,150-4)

- 위탁운영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위탁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

- 수탁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조의2)
- 수탁자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4조제2항)
- 수탁자 지도·감독 규정 개정 (안 제15조제1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봉규)

□ 조문검토

-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의 위탁운영 신청 절차 및 용어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과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성과평가(제7조의2), 예산서·사업계획서 제출(제14조제2항), 지도·감독 강화(제15조) 등의 규정을 신설·보완하려는 사안임.
- 남양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호적 환경에서의 일자리 제공과 자립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남양주시가 설치한 시책형 장애인 지원 시설로서 장애인 관련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시비를 지원하고 있음.
- 본 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 직업재활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비법정 시설로서, 운영 근거와 기준이 전적으로 조례에 의해 정해지는 만큼 조례 규정의 명확성 및 실효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저촉 없이 조례 체계를 정비하는 측면에서 타당하고 입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 다만, 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시행규칙 제정 또는 운영 세부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 음

남양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855-1
----------	-------

2025. 11. 21.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수탁자의 예산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사전 검토를 통해, 장애인재활 자립작업장 운영의 투명성 및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14조제2항 수탁자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 수정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 수정한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

남양주시조례 제 호

남양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남양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제2항 중 “5일”을 “30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u>제14조(보고) (생략)</u></p> <p><u><신설></u></p>	<p><u>제14조(보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u></p> <p><u>② 수탁자는 매 회계 연도 개시 5일 전까 지 다음 회계연도 예 산서 및 사업계획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u></p>	<p>제14조(보고) ① (개정 안과 같음)</p> <p>② ----- ----- 30일 ----- ----- ----- ----- -----.</p>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56

2025. 11. 21.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5. 11. 12.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2025. 11. 12.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11. 2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2025. 4. 22. 공포, 2025. 10. 23. 시행) 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조례 제명 개정과 함께 가족센터 설치·운영 규정 및 사업수행실적 평가 규정을 신설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탁운영 관련 조항 추가 등 현행 조례 정비

나. 주요내용

- 제명 개정
 -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남양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 제11조)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상위법 근거 반영 및 센터 명칭 변경

(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족센터)

※ 2005. 7.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및 2007. 2. 남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
2018.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2022. 2. 남양주시 가족센터로 명칭 변경)

- 센터의 업무, 시설 및 조직(안 제3조~제5조)
- 센터의 운영 및 관리(안 제6조~제9조)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 강사 활용 및 주민 참여 활성화
- 센터 지도·감독 및 사업수행실적 평가(안 제10조, 제11조)
- 위탁 운영 및 계약 관리(안 제12조~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봉규)

□ 조문검토

-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 기존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하고,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
- 아울러 운영위원회 구성, 자원봉사자 운영, 강사활용, 주민참여, 민간 위탁, 지도·감독, 사업수행실적 평가 등 기존 조례에서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여 센터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족센터 운영체계를 정비

하려는 것으로, 법적 타당성 및 필요성이 충분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 음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57

2025. 11. 21.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5. 11. 12.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5. 11. 1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11. 2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상위법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2023. 7. 18. 전부개정 / 2025. 7. 19. 시행) 그 개정 사항을 남양주시 조례에 반영하여 입양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제5조)

- 「입양특례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장애입양아동에 관한 정의 정비

- 조례의 각 조항에 포함된 “양친” 용어를 “양부모” 로 정비

- 입양기관의 기능이 공공으로 이관되어 입양기관 관련 내용 삭제

○ 입양 관련 지원 신청서식 정비(안 제8조)

- 조례 제6조 각 호에 따른 지원 신청시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르도록 하고, 기존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삭제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봉규)

□ 조문검토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개정으로 조문 및 용어가 정비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기능이 폐지된 입양기관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문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임

- ‘장애입양아동’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은 상위법에 직접 적정의 규정은 없으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등록 기준과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질환아동 지원체계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기초로 하여 입양 당시 및 입양 후의 장애·질환 여부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 판단의 명확성과 수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조례 정비로 판단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용어·정의의 정비와 지원 신청 절차의 명확화를 통해 입양가정 지원 제도의 운영 안정성과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 음